

한국전력기술(주)

사업 안전관리자(별정직) 채용공고

1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임용기간	채용인원	근무지
안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한주 가스복합 열병합 EPC 공사- 근로기간 : 임용일 ~ 2024.06.30(일)* 용역기간 : 2024년 6월 30일까지	1명	울산 (현장)

* 세부 직무수행 내용 등은 직무기술서 참고

* 근무지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60

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

응시자격 및 근무조건

구분	세부내용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입사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안전관리 자격증 보유자(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)
처우 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응시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경력 산정(학력 및 군 경력 별도)
계약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임용일 ~ 2024.06.30(일)- 프로젝트(용역)의 계약연장, 조기종료, 수행업무 종료, 발주처 근로계약 해지 요청 등에 따라 연장, 조기 계약만료 또는 해지 가능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사회형평적 인재 및 채용분야 유관 경험 혹은 경력자 우대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, 정규직 전환 혜택 없음사규에 따른 사택 지원 및 현장수당 지급 / 통근버스 운행 없음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우대사항(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하며 중복인정 불가, 전형별로 부여)

분야	세부내용	가산점
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	미부여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* 지원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	5점
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* 지원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	
북한이탈 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	3점
다문화 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* 가족관계증명서, 여권 사본,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 가족임을 증빙이 가능한 자 	
경력단절 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	

*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에 의거, 채용 인원이 3인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. 단,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

3 채용일정

구분	내용	일정	비고
1	채용공고	'23.11.21(화) ~ 12.06(수)	마감일 11시까지
2	입사지원서 접수	'23.11.29(수) ~ 12.06(수)	
3	서류전형	'23.12.11(월)	-
4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3.12.15(금)	-
5	면접전형	'23.12.19(화)	본사(김천)
6	채용점검위원회	'23.12.22(금)	-
7	최종합격자 발표	'23.12.28(목)	-
8	임용*	'24.01.02(화)	-

* 지원자의 일신상 사유 또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입사일 조정 가능

4 전형방법

□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

구분	세부내용
지원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고기간 : 2023.11.21(화) ~ 12.06(수) 11시 ■ 접수기간 : 2023.11.29(수) ~ 12.06(수) 11시 ■ 접수방법 : 채용 홈페이지(https://kepcoenc.recruiter.co.kr) 인터넷 접수 * 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접수 마감시간 연장 없음)
서류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형방법 : 입사지원서 정성평가(10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사지원서의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험 혹은 경력사항,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,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직무기술서의 직무수행내용, 필요지식, 필요기술, 직무수행태도와의 적합성 정성평가 - 합격순위 : 위원 점수 산술평균 고득점자순(가산점 포함, 소수점 셋째자리 버림) *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부적격 판정(60점 미만) 시 불합격 처리 - 동점자 처리 : 전원 합격 처리 ■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일 내용 반복, 비속어, 회사명 오기, 블라인드 채용 위반, 자기소개서 표절 등 ■ 합격인원 :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
면접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형방법 : 실무진 면접(10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격순위 : 위원 점수 산술평균 고득점자순(가산점 포함, 소수점 셋째자리 버림) - 동점자 처리 : 취업지원대상자 > 장애인 > 기초생활수급자 > 그 외 사회형평적 가산점 대상자 > 서류전형 합격 순위 > 내부 위원 면접점수 고득점자 > 분야 경력기간 순 ■ 합격인원 :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
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용 전후로 신체검사 실시 및 채용 결격사유 미해당자에 한해 최종 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체검사 : 임용예정자가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결과표 제출

* 회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조(채용전형 심사위원) 2항에 의거 채용전형위원 제척사유 발생 시 전형위원에서 제외하고, 다른 전형위원으로 대체 또는 해당 전형위원 점수 미반영

□ 예비합격자 운영

- 각 전형별 합격기준 충족자 중 예비합격자 운영 :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
- 서류전형 : 서류전형 발표당일까지 합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
- 면접전형 : 임용당일까지 합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

□ 제출서류(증빙서류 일체에 개인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)

구분	세부내용
입사 지원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서류(자격증 및 경력증명서) 1부 ■ 경력증명서(재직기간, 직위, 담당업무 등 상세 기재) ■ 사회형평적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 1부 ■ 국민/공무원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 기타 자격증, 외국어 성적증명서, 병적증명서 등 1부 ■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(석사 이상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) <p style="color: red;">* 자격증 제외 모든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</p>
입사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체검사결과표(증명사진 부착), 영수증, 통장사본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 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신규 검사자를 대상으로 3만원 한도 실비 정산 <p style="color: red;">* 유효기간이 유효한 신체검사 결과표가 있을 경우 제출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

5 유의사항

- 채용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.
-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,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습니다.
- 증빙서류 일체에 개인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, 학교명 등)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온라인으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채용서류 반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세부내용
적용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채용 단계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기재 및 언급 일절 금지(연령, 성별, 출신학교 및 지역, 신앙, 사회적 신분 등)
적용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교명,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사용 금지 [예시] kepcoenc@학교명.ac.kr (X) 생년월일@kepc-enc.com (X) ■ 입사지원서(경험/경력기술서, 자기소개서) 작성 및 면접전형 진행 시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의 직·간접적 기재 및 언급 금지 [예시] 서울 관악산 자락에 있는 대학 재학 시... (X)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30세 홍길동입니다. (X)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존경하여... (X) 한국전력기술에 재직하고 계신 어머니를 따라... (X) A업체/OOOOOO 인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. (O)

- 생년월일, 연락처, 성별 등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됩니다.
- 채용 관련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할 경우 채용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자격요건, 응시분야 등의 적합여부,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,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서류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하거나,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, 시험 부정행위,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는 전형단계 무관 당해 시험은 무효로 하며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 처리합니다.
- 입사 후에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문 의 처 :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kepcoenc.recruiter.co.kr>) Q&A 게시판

별첨 **결격사유 (인사규정 제9조)**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9. 채용공고상 요구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)
 - 가.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3.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15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